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9일 최광옥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공개대상기관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호 다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 제2조 제3호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 수수료의 100분의 50 경감
-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  
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를 개정

###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정사항과,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열람할 경  
우,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  
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

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보통신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도 이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시에 개정을 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